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최인돌 소유물건(2025타경12043)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이명애

감정평가서번호: 2507-10-1204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두정감정평가사사무소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 현 경

감정평가액	일억팔천이백만원정(₩182,000,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이명애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최인돌 (2025타경 12043)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25	2025.07.23 ~ 2025.07.25	2025.07.25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82,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82,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1. 감정평가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소재 “둔포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우정에쉐르아파트 102동 15층 1502호)로서, 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3. 기준가치,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 2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07.25.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5.07.23일자로 실지 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에 관한 의견

1) 부동산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해 가치형성요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①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가치를 일체로 하여 유사사례를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보정·비교하여 구분소유권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② 1동 전체의 가액을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한 후 대상구분 소유권에 배분하는 “원가법”
- ③ 수익성부동산의 구분소유권 감정평가시 대상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한 이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대상부동산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수익환원법”

2) 본건 집합건물(아파트)은 인근 유사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시세와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하여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

### 5. 감정평가 조건

해당사항 없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6. 그 밖의 사항

- 1) 본건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수량 등 목록표시는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으며, 호별 위치 확인은 현황 점유부분에 의거하였음.
- 2) 별지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상 토지·건물배분비율을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 요함.
- 3)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이용상황은 관련 공부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탐문조사에 의하였음.
- 4) 현장조사 당시 본건 및 거래사례의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지 내 일반적인 관리상태와 통상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경매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 2. 대상물건 개요

물 건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92					
건물명·동명		우정에쉐르아파트 102동			층수	지하 1층, 지상 15층	
건 물 의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사용 승인일	2005. 12. 20.	
구 분		전유면적 (㎡)	공 용 (주) 면적(㎡)	합계면적 (㎡)	대지권 (㎡)	용 도	
일련 번호	호 수					공부	현황
1	1502	84.18	22.12	106.3	46.669	아파트	아파트

### 3.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 1)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 물 명 동 · 호수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	둔포리 292	우정에쉐르아파트 102동 12층/120*호	84.18	183,000,000	2,173,913	2025.05.06
						2005. 12. 2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거래사례는 대상물건과 동일한 동내의 사례로서, 위치·구조·면적 등 제반요인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는 거래된 사례(②)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 4.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로 정상화 하는 작업으로서,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사정보정 요인 없음.(1.00)

### 5. 시점수정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일련 번호	비교 사례	산정기간	비고
1	a	2025.05.06 ~ 2025.07.25	아파트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25.05.06~25.07.25)  거래시점 : 2025.05.06, 2025년04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7.25, 2025년06월 지수를 적용 함  2025.05.0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4월) : 99.9 2025.07.25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6월) : 99.6  시점수정치 : $99.6/99.9 \approx 0.99700$

### 6. 지역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비교 거래사례는 본건과 인근지역내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7. 개별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 - 개별요인 비교항목 (주거용)

조건	항 목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 번호	사례 기호	단지 외부요인	단지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계
1	㉔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사례 대비 대체로 대등함					

### 8. 참고가격 자료

#### 1) 본건 및 인근 가격수준

구분	가격수준
우정에쉐르 아파트 (본건 유사)	180,000,000원~190,000,000원 내외 수준

#### 2) 인근 평가사례

소재지	건 물 명 동 · 호수	전유 면적 (㎡)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둔포리 292	우정에쉐르아파트 10*동 14층/140*호	84.18	150,000,000	1,782,000	19.05.13	경매
둔포리 292	우정에쉐르아파트 10*동 4층/40*호	84.18	138,000,000	1,639,000	18.10.26	시가 참고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9. 대상물건 전유면적당 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173,913	1.00	0.99700	1.00	1.00	2,167,391	2,167,000

### 10. 대상물건 시산가액

일련 번호	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비고
1	2,167,000	84.18	182,418,060	182,000,000	-

###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 결정

평가대상 물건과 유사한 인근지역내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인근 동종·유사 물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최근 거래가격수준의 변화추이, 호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일련 번호	전유면적(㎡)	공용면적(㎡)	합계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1	84.18	22.12	106.3	182,000,000	-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292 우정 에쉐르 아파트 102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15층	1층 2층~15층 각	329.89 424.58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3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제 15층 제 15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18	84.18	182,000,000	비준가격 (공용면적 포함)	
	292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6,907				
			1. 소유권	46.669				
			1.	6,907	46.669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54,600,000 127,400,000	
	<b>합 계</b>						<b>₩182,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소재 "둔포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 됨.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2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종로2류(폭 15m~20m)(접함), 중학교(둔포중학교)(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둔포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둔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둔포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9)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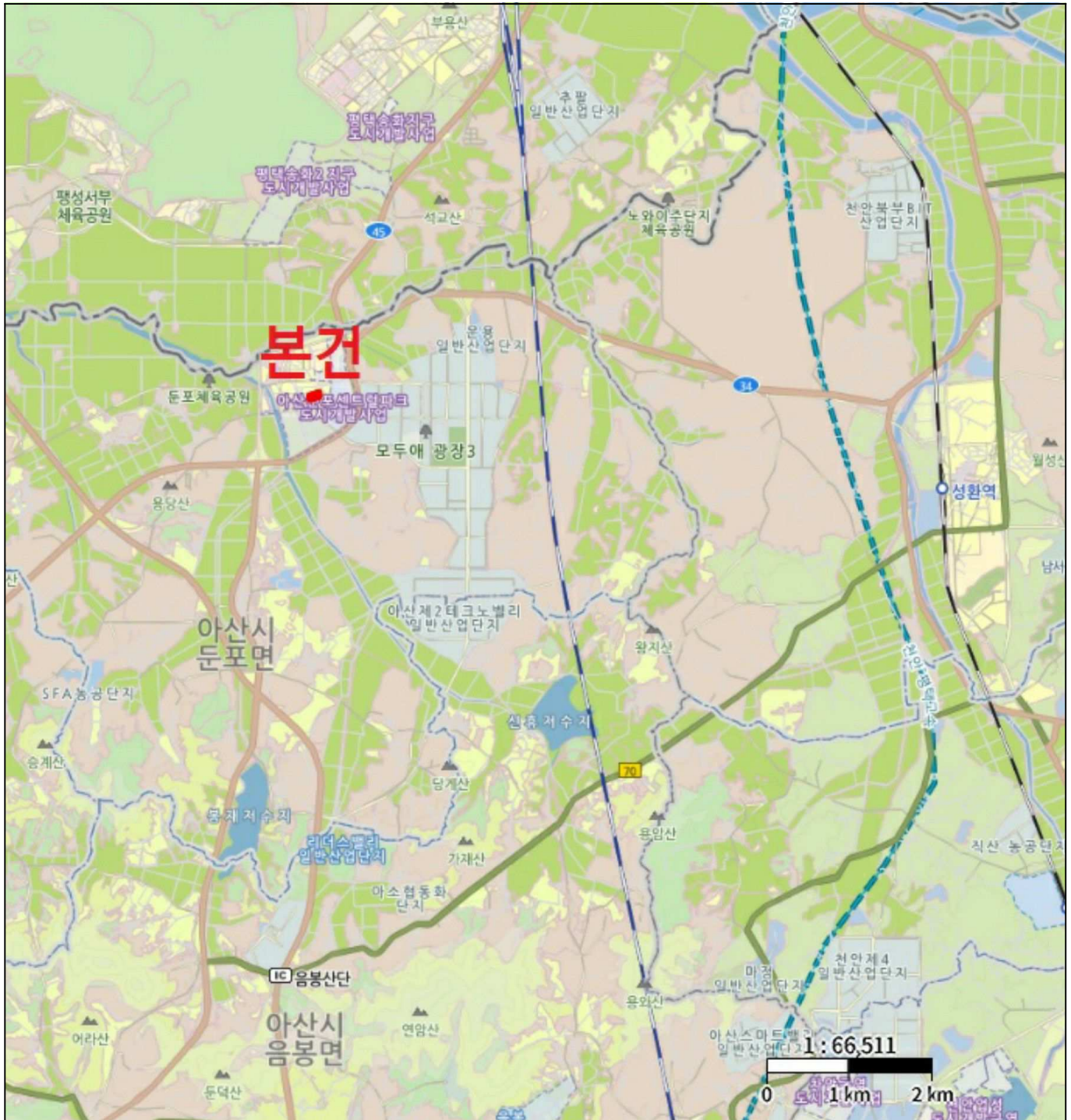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92 우정에쉐르아파트 102동 15층 1502호
-----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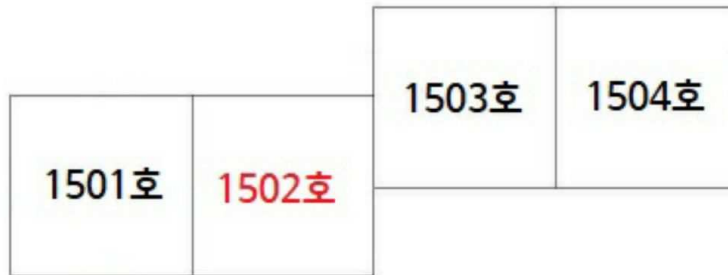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92 우정에셰르아파트 102동 15층 1502호
-----	--



# 건 물 개 황 도

## 호 별 배 치 도



**[우정에쉐르 아파트 제102동 제15층 제1502호]**



